

취업지도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02. 28. 개정 2018. 10. 29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취업지도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산학취업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학과 교수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그리고 교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8. 10. 29.)

③ 위원장,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한다.

1.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지닌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(개정 2018. 10. 29.)

제4조 (위원회 소집 및 의결) ①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,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이 소집한다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재정) ① 위원회의 운영상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의 지원을 받는다.

제6조 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(개정 2018. 10. 29.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